

[청구인] ○○○

[피청구인] ○○구청장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일부인용」 한다

[청구취지]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인천광역시 ○○구 ○○○로○○번길 ○-○, ○층(○○동)에서 ‘○○○○’ (이하 ‘이 사건 업소’ 라 한다)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:○○경 청소년 최○○(○○세)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와 담배(담배 ○갑, 소주 ○병 등 총 ○○,○○○원 상당)를 판매한 행위로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다.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에게 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○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20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○개월의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○개월(20○○. ○○. ○○. ~ ○○. ○○.)의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 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2. 청구인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청구인은 ① 신분증을 수차례 확인한 단골 손님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CCTV 공개 및 조사에 착실히 임하였으나 일정기간이 지나 CCTV 증거 영상이 소실된 점, ② 평소 신분증 확인을 엄격히 이행하여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도 매출증대를 위해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, ③ 낮은 매출과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장애를 가진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·감경 혹은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주장

한다.

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청구인이 신분증 실물 대조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서, 경찰 조사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의하여 불 때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청구인에게 이미 위반행위의 내용·기간·횟수·이익 등을 참작하여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감정기준에 따라 2분의 1 감경처분을 한바,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타격이 크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 또는 추가 감경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을 해하고 법질서 유지에 그릇된 인식과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, 청구인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입게 될 손실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4.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

가. 관계법령

청소년 보호법 제2조, 제28조

담배사업법 제17조
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

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○○구 ○○○로○○번길 ○-○, ○층(○○동)에서 ‘○○○○○○’ 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.

2) 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 〇〇:〇〇경 청소년 최〇〇(〇〇세)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와 담배(담배 〇갑, 소주 〇병 등 총 〇〇,〇〇〇원 상당)를 판매한 행위로 인천〇〇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〇〇. 〇〇. 〇〇. 인천〇〇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.

3) 위 2)의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 청구인에게 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〇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.

4) 위 2)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.

5) 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.

6) 피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〇개월의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〇개월(20〇〇. 〇〇. 〇〇. ~ 〇〇. 〇〇.)의 처분을 하였다.

다. 판 단

1) 먼저, 관계법령을 살펴보면
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8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에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가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

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4항에 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·기간·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가)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8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0. 00. 00. 00:00경 청소년 최00(00세)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와 담배(담배 0갑, 소주 0병 등 총 00,000원 상당)를 판매하다 「청소년 보호법」 위반으로 인천00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00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.

나)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출증대를 위해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며, 이 사건 처분의 취소·감경 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원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,

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(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),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

또한,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(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4930 판결 참조)고 판시하고 있는바, 현행 「담배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취소,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) 다만,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일 위반 전력이 없는 점, 이 사건 업소에서 담배 판매가 중요한 영업매출의 부분을 차지하여 청구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, 담배 판매금액이 소액으로 위반의 내용·정도 등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